

#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31
----------	------

제출연월일: 2019. 3. 14.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1. 개정이유

- 가. 노외주차장의 최초 20분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 완화
- 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주차장 요금 감면혜택을 “저공해 자동차”까지 확대하고,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 면제조항을 추가
- 다. 상위 법령 위임 조례 정비 대상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순화용어로 개정

## 2. 주요내용

- 가. 주차 일부시간에 대한 무료 규정 단서 삽입
  -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최초 주차시간이 20분 이내 일 때는 무료로 함(별표1)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내용을 추가하여 친환경 자동차 감면 대상 확

대(안 제6조제4항제10호)

다. 상위 법령에서 기계식주차장 철거에 관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내용 반영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가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안 제11조의2)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등

### 3. 근거법규: 따로 붙임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나. 「주차장법」 제19조의1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5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5948호, 2019. 2. 12.)

라. 입법예고: 2019. 1. 28.~2. 18.(21일간) 의견없음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925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등으로”를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자는”을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본문 중 “자동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을 “자동차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6조제5항 중 “제8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림)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중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최초 주차 시간이 20분 이내 일 때에는 무료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공 영 주 차 장 요 금 표

(단위: 1구획당, 원)

구분	기본 최초 30분 이내 (1구획당)	기본초과 매30분 단위			1일 주차 요금	월정기 주차
		10분 이내	20분 이내	30분 이내		
1급지	500	200	400	500	10,000	80,000 이내

비 고

-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의한다.
-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 4월~10월 08:00~20:00
  - 11월~ 3월 09:00~19:00
-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최초 30분 이내 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초과 10분단위이내의 시간은 10분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최초 주차 시간이 20분 이내 일 때에는 무료로 한다.
- 대형차량(2.5톤이상, 25인승 이상)은 기준요금의 2배로 한다.
- 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주차요금을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 (주차요금 등) ①법 제9조 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및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시간측 정기·주차카드·주차표 <u>등</u>으로 방법으로 한다.</p> <p>② 삭   제</p> <p>③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p> <p>1.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p> <p>2.·3. (생   략)</p> <p>④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경감대상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 각호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p> <p>1. ~ 4. (생   략)</p>	<p>제6조 (주차요금 등)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등의</u> -----.</p> <p>③----- ----- ----- -----.</p> <p>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p> <p>2.·3. (현행과 같음)</p> <p>④-----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5.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u>교부한</u> 성실 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수상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감면한다.</p>	<p>5. ----- ----- ----- <u>발급</u> ----- ----- ----- ----- -----.</p>
<p>6. ~ 8. (생략)</p>	<p>6. ~ 8. (현행과 같음)</p>
<p>9. 「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장기기증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로서 증을 소유한 <u>자는</u> 당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p>	<p>9. ----- ----- ----- ----- ----- ----- ----- <u>사람에게</u> ----- -----.</p>
<p>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u>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u>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u>다만, 월주차</u></p>	<p>10. ----- ----- ----- <u>자동차표지</u>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u>저공해 표지를 부착한</u> ----- ----- ----- ----- ----- . <u>다만, 전기자동</u></p>

현 행	개 정 안
<p><u>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u></p> <p>⑤ 제1항부터 <u>제8항</u>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방법 이외에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가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⑥ (생략)</p> <p><u>&lt;신설&gt;</u></p>	<p><u>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u></p> <p>⑤ ----- <u>제4항</u>----- ----- ----- ----- ----- -----.</p> <p>⑥ (현행과 같음)</p> <p><u>제11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 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림)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u></p>

현행	개정안
<p>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때에는 시설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 별표 3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 ⑤ (생략)</p>	<p><u>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u></p> <p>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발급-----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b>【별표 1】</b>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1구획당,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기본 최초 30분 이내 (1구획당)</th> <th colspan="3">기본초과 매30분 단위</th> <th rowspan="2">1일 주차 요금</th> <th rowspan="2">월정기 주차</th> </tr> <tr> <th>10분 이내</th> <th>20분 이내</th> <th>30분 이내</th> </tr> </thead> <tbody> <tr> <td>1급지</td> <td>500</td> <td>200</td> <td>400</td> <td>500</td> <td>10,000</td> <td>80,000 이내</td> </tr> </tbody> </table> <p>비 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의한다.</li> <li>2. 주차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10월 08:00~20:00                          나. 11월~ 3월 09:00~19:00</li> <li>3.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최초 30분 이내 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초과 10분단위이내의 시간은 10분단위로 계산한다.</li> <li>4. 대형차량(2.5톤이상, 25인승 이상)은 기준요금의 2배로 한다.</li> <li>5. 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주차요금을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li> </ol>	구분	기본 최초 30분 이내 (1구획당)	기본초과 매30분 단위			1일 주차 요금	월정기 주차	10분 이내	20분 이내	30분 이내	1급지	500	200	400	500	10,000	80,000 이내	<p><b>【별표 1】</b>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1구획당,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기본 최초 30분 이내 (1구획당)</th> <th colspan="3">기본초과 매30분 단위</th> <th rowspan="2">1일 주차 요금</th> <th rowspan="2">월정기 주차</th> </tr> <tr> <th>10분 이내</th> <th>20분 이내</th> <th>30분 이내</th> </tr> </thead> <tbody> <tr> <td>1급지</td> <td>500</td> <td>200</td> <td>400</td> <td>500</td> <td>10,000</td> <td>80,000 이내</td> </tr> </tbody> </table> <p>비 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의한다.</li> <li>2. 주차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10월 08:00~20:00                          나. 11월~ 3월 09:00~19:00</li> <li>3.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최초 30분 이내 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초과 10분단위이내의 시간은 10분단위로 계산한다. <u>다만,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최초 주차 시간이 20분 이내 일 때에는 무료로 한다.</u></li> <li>4. 대형차량(2.5톤이상, 25인승 이상)은 기준요금의 2배로 한다.</li> <li>5. 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주차요금을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li> </ol>	구분	기본 최초 30분 이내 (1구획당)	기본초과 매30분 단위			1일 주차 요금	월정기 주차	10분 이내	20분 이내	30분 이내	1급지	500	200	400	500	10,000	80,000 이내
구분			기본 최초 30분 이내 (1구획당)	기본초과 매30분 단위				1일 주차 요금	월정기 주차																										
	10분 이내	20분 이내		30분 이내																															
1급지	500	200	400	500	10,000	80,000 이내																													
구분	기본 최초 30분 이내 (1구획당)	기본초과 매30분 단위			1일 주차 요금	월정기 주차																													
		10분 이내	20분 이내	30분 이내																															
1급지	500	200	400	500	10,000	80,000 이내																													

## 근거법규

###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⑪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⑫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울산중구005		
정책명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계획		
소관부서	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부서명	교통과	
	담당자명	박인영	전화번호 052-290-396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2월 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교통과)	<p>본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p> <p>제정의 주요내용은 주차 일부시간에 대한 무료규정 단서 삽입(별표1), 친환경 자동차 감면대상을 저공해 자동차까지 확대(안 제6조), 상위법령 위임조례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에 대한 내용임.</p>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p>'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계획'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p>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p>「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2019년 02월 12일</p> <p><b>울산광역시중구성별영향평가책임관</b></p> <p>(담당자/연락번호 : 류지숙/052-290-4903)</p> <p>교통과장 귀하</p>			

##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2. 미첨부 사유

- 동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 구 세입의 감소는 예상되나, 시행에 따른 별도 비용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 3. 작성자

- 소 속: 교통과
- 직 책: 주무관
- 이 름: 박인영
- 연 락 처: 290-3962